

## 보도자료

2010년 12월 24일(금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
가. 편성평가정책과 권병욱과장(2350) 나. 디지털방송정책과 유대선과장(2330)  
다. 네트워크정보보호팀 박철순팀장(2750) 라. 통신이용제도과 최성호과장(2550)

# 2010년 제77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

### [의결안건]

#### 가. 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

-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
- 위원회는 부처협의 및 의견수렴('10.12.1~13) 과정에서 제시된 방송사업자 의견을 반영, <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> 항목의 명칭과 평가방법을 조정함
  - <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평가> 항목의 명칭을 <시청자 의견반영 종합평가>로 변경하고,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와 시청자 의견의 프로그램 반영결과 등을 정성평가하는 항목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함
- 동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

## < 주요 개정내용 >

- 방송평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진 항목은 삭제하고, 유사 평가항목은 통합 (평가항목 31개→11개, 세부 평가척도 69개→34개)
- <경영의 적정성>과 <자회사 평가결과 활용> 항목은 삭제하고, <재무의 건전성>과 <경영투명성 확보>항목은 통합하여 재허가 심사항목과 차별화
-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영역별로 정성평가 방식 도입
  - ※ 내용·편성 영역 : 자체심의 및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(정성평가)
  - 운영영역 :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(정성평가)
-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평가 신설(SO·위성·PP) 또는 강화(지상파TV)
- 방송사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여부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종합평가 항목 신설
- 기존 홈쇼핑PP의 운영영역 배점을 확대(250점→300점)하여, 홈쇼핑의 중소 기업 보호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

### 나. 「2011년도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행계획(안)」에 관한 건 (첨부1 및 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2012년말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디지털전환 특별법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('09.6월)에 따라, 「2011년도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행계획(안)」을 심의하여 의결함

### 다.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(안)에 관한 건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스마트폰,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, 글로벌 모바일 보안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중장기('11~'15년) 「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(안)」을 심의하여 의결함

라. 「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,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(고시)」 제정안에 관한 건 (첨부2 참조)

-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, 선불통화 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지정, 보험 가입금액 산정 및 보험금 배분 등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인 「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,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(고시)」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

〈첨부1〉

## 2011년 디지털 전환 시행계획안 주요내용

□ '11년 추진 목표 및 전략

< 목 표 >

**인지율 90%, 보급률 80%, 커버리지 94%**

< 추진 전략 >

- ◆ 지금까지의 디지털전환은 제작·송출시설 구축, 송신시설의 디지털 전환, 시범사업 등 공급자 측면의 디지털전환을 강조
- ◆ '11년은 홍보, 수신환경 개선, 취약계층 지원 등을 강화하여 시청자 중심의 디지털전환을 중점 추진

□ 세부 시행계획

① 시청자측면 강화

○ 대국민 홍보강화 및 디지털TV 확산 여건 조성

- (홍 보)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, 장애인, 농어촌 주민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면대면 홍보 등 전략적 홍보 추진
- (DTV 등 보급) 인터넷에서만 구입 가능한 디지털 컨버터를 대형마트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
- 중소기업 보급형 DTV 조달등록을 추진하고, 정부부처·공공기관에 디지털TV수상기 교체 협조 요청

## ○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

- (난시청 해소) 방송사 공동으로 난시청 해소를 위해 소출력동일채널중계기(50개소)와 마을 공시청설비 개선(200개소), 위성수신기 보급(13만세대) 등 추진
- (수신환경 조사) 디지털방송 수신율과 난시청 지역 파악을 위해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조사(전국 1,500개 지역) 추진
- (위성을 활용한 난시청 실험방송) 디지털방송의 직접수신은 물론 유료 방송시청도 불가능한 도서·산간 지역에 대해 천리안 위성을 활용한 난시청 해소 실험방송 추진 검토

※ ETRI, 방송사 등과 협의하여 '11년에 실험방송 관련 기술적 측면 검토

- (규제완화) 방송보조국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국방부,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
- (초중고교 지원) 교과부, EBS와 공동으로 영세 농어촌 지역 초·중·고교의 노후 지상파 TV수신시설에 대해 무상점검 등 추진

## ○ 취약계층지원 등 디지털방송 기반 확충

-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권자, 일부 TV수신료 면제 가구,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7만 가구에 DTV 구매보조 또는 디지털컨버터 무상지원
- (장애인) 소득이 낮은 시각장애인, 난청노인 등에게 화면해설방송 수신기(5,000개), 자막방송수신기(8,584개)를 지급

## ② 공급자측면 보완

- (디지털보조국)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보조국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, 융차지원 및 관세감면 등의 지원정책을 병행
- (시범사업) 제주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('11.6.29)

○ **(아날로그방송 가상종료)** 디지털전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과 기술적 점검을 위해 전국동시 또는 지역별로 **아날로그TV방송 가상종료 추진**

※ 가상종료(Soft test) ; 아날로그방송중단 자막을 내보내는 시험방송 형태

○ **(일본사례조사)** '11.7.24에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는 **일본에 실무 조사단을 파견**

-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과 방송사의 대응전략 등을 파악하여 국내정책에 반영('11.7월~8월)

※ '09.7월 일본은 미국에 아날로그방송 합동조사단 파견

□ **소요재원 및 향후일정**

○ 소요 재원 : '11년도 예산 편성액은 411.6억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수신환경 개선	용자지원	시청자 지원(홍보)	시범사업	취약계층 지원	합계
예산	2,080	22,000	3,500	3,280	10,300	41,160

○ 향후 일정 : 정부부처, 방송사 등 관련기관에 시행계획 송부(12월)

<첨부2>

## 선불통화서비스 관련 기준(고시) 제정안 주요내용

### □ 주요내용

- (피보험자 지정)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를 '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'로 지정

※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공고 및 접수, 보험금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

- (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) 선불통화사업자의 자산규모, 선불통화서비스 발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불통화서비스 발행예정액의 50% 이상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기준 마련

<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>

보험가입금 산정조건		당해연도 보험가입금액
전년도 순자산 규모	$\frac{\text{선불통화권 발행예정액}}{\text{전년도 전기통신역무매출액}}$	
30억원 이상	10% 미만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50% 이상
	10%-30%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70% 이상
	30% 초과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100%
30억원 미만	10% 미만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70% 이상
	10%-30%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80% 이상
	30% 초과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100%

- (보험금 배분 및 지급 절차) 이용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피해 보상 공고, 이용자의 보상 신청, 보험금 배분 및 지급 절차를 규정

### □ 향후일정

- '11. 1월 : 「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,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 공포·시행